

학점포기 신청 안내

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



학점포기란? 학점포기제는 기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.
(근거 : 학칙 시행세칙 제6조 (재수강 및 학점포기))



신청자격 :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**4학년 재학 중인 학생**(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).
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

※ 복수전공 학생은 인정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 이상의 복수전공에서의 취득 성적이 있어야 하며
편입생의 경우는 2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.

※ 학사학위취득유예생 (수강신청 '유/무' 모두 포함) 은 졸업사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



대상 과목 : 포털 신청화면에서 신청 가능한 과목이 별도 표기됩니다.

① 주전공 기준 전공기초(필수)를 제외한 전공교과목과 타전공일반선택 교과목

② 교육과정의 개편·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양교과목

※ 음악대학 전공과목은 음악대학 내규로 인해 포기 신청 불가, 교직과목 및 ROTC 과목 포기 신청 불가

※ 교환유학, 학점교류 등 외부 취득 후 인정 학점 포기 신청 불가



신청방법 : HY-in포털 > 신청 > 성적 > 학점포기신청

※ 학점포기 신청 후 포털 성적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.

학점포기제도 안내

02

학점포기 신청기간 : 2025.04.21(월) 09:00 ~ 04.23(수) 23:59까지
※ 위 기간 외의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.

03

최대 포기 가능 학점 : 학점포기 가능학점은 재학 중 총 **9학점 이내**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04

포기한 과목의 처리

- ① 학점포기에 따른 성적증명서 표기 : 성적증명서 상 포기과목 옆에 W(withdrawal)로 표기됩니다.
- ② 졸업우수우등 선발 : 학점포기 전의 성적으로 우수생 및 우등생을 선발합니다.

05

유의사항: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, **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**합니다.
전공에 따라 학점포기 시 공학교육인증(ABEEK), 건축학교육인증 등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
학점포기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